

1. 제안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제안사유

○ '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의 확정통보 및 소방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회계연도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와 유가상승 등 예측 불가능했던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본 예산 편성사업 중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인 명구조훈련장 설치사업 및 소방차량 유류비의 보정과 함께

지난 2009년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의 진행과 관련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지급 이자가 누적됨으로써 우리시 재정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 판결결과에 따라 향후 판결에 변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우선적인 가지급을 위한 소요재원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Ⅲ.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구	구 분		÷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945,771	920,739	25,032	2.7	
일	반	회	계	0	0	0	0	
특	별	회	계	945,771	920,739	25,032	2.7	

나. 세 출 예 산(총계)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838,936	1,814,885	24,051	1.3
일	반	호	계	893,165	894,146	△ 981	0.1
특	별	회	계	945,771	920,739	25,032	2.7

2.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해당 없음

2) 소방특별회계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945,771	920,739	25,032	2.7
세 외 수 입	2,171	1,988	183	9.2
국고보조금 등	6,996	7,003	△7	△0.1
보전수입 등	43,438	17,602	25,836	146.8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893,166	894,146	△980	△0.1
지 역 자 원 시 설 세 (특 정 부 동 산 분)	312,487	308,157	4,330	1.4
소 방 안 전 교 부 세	26,592	28,972	△2,380	△8.2
일 반 회 계 전 입 금	554,087	557,017	△2,930	△0.5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893,165	894,146	△981	△0.1
		퓺	정 운	영	경 비	0	0	0	0
		재	무	활	동	893,165	894,146	△981	△0.1
일 회	반 계		소 방 일 반	^투 별 전	회 계 출 금	893,165	894,146	△981	△0.1
			국 고 보	조 금	급 반 납	0	0	0	0
		정	책 /	. 	걸 비	0	0	0	0

2) 소방특별회계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945,771	920,739	25,032	2.7
행 ?	정 운	영	경	비	735,895	714,101	21,794	3.1
재	무	활		동	763	763	-	_
소방	특별회2	계 일	반전출	출금	0	0	-	_
국 :	고 보	조 금	는 반	납	0	0	-	_
정	책 .	사	업	비	203,916	200,594	3,322	1.7
예	I	4		비	2,797	2,746	51	1.9
통합계	대정 안정	g 화기	금 여	탁	2,400	2,535	△135	△5.3

3. 회계별 사업내역

가. 일반회계: 해당 없음

나. 소방특별회계

사 업 내 역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739,018	713,902	25,116		
	소방합동청사 건립 (시설비 감액)	3,124	11,406	△8,282	종로소방서 철거·토목공사중 문화재 발견으로 인해 당초계획한 문화재발굴조사 공정이 지연되어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금년 회계 중 집행 불가한 시설비 (건축비)의 감액추진	P.229
계	소방활동지원 (미지급초과근무수당 배상금 지급)	29,859	21,577	8,282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계속적 이자비용 의 증가와 관련 미지급초과근무 수당 지급대상자 중 가지급을 희 망하는 ' <u>퇴직자 및 타시도 전출</u> <u>자'</u> 를 대상으로 미지급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을 위해 소요예산 획 보(배상금)	P.234
속사업	인력운영비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	685,993	664,199	21,794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계속적 이자비용의 증가와 관련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가지급을 희망하는 ' <u>현직 소방공무원</u> '을 대상으로 미 지급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위해 소요예산 확보(인력운영비)	P.238
	구조장비보강 및 유 지관리 (다목적 인명구조훈 련탑 설치와 관련 원자재가격상승에 의한 부족사업비 보 완)	4,478	4,238	240	'22.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된 3개 소방관서(특수단, 노원, 강동)의 다목적 인명구조훈련장 설치 시 업진행 중 예측하지 못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공사계약이 불가한 상황으로, 기 계획한 시 업목표 달성을 위한 물가상승률 에 의한 부족예산 확보	P.241
	구급장비보강 및 유 지관리 (감염병 방역물품 물류 시스템 임대 및 운영)	4,642	4,602	40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예상 및 예측불가한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를 위한 비축 방역물품의 성 능유지를 위한 외부 물류창고시	P.245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η 1	사업별 설명서
					스템 용역운영에 <i>=</i> 확보(4개월 임대비용		
	일반층 가스시설 개 선사업 (LPG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 등 시설 개선)		20	△8	본 예산편성 시 7 상(200가구) 중 자 도시가스 전환 예정 스시설 개선 취소: 발생으로 국고보조 한 기 편성예산의 7	부담(20%) 및 기구들의 가 가구(△75가구) 금 감액에 의	P.250
	소방차량 유지관리 (소방차량 유류비 부 족예산 확보)	6,334	4,207	2,127	본예산 편성시 여 큰 폭의 국제유가 나19 완화이후 출동 가에 의한 유류사용 편성된 유류구매 여 진이 예상됨에 따려 료 시 까지 출동공학	상승 및 코로 등, 훈련의 증 등량 증가로 기 예산의 조기소 나 회계연도종 백을 예방하기	P.253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 지관리 (서울소방 빅데이터 센 터 구축)	3,836	3,653	1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및 네트워크 사업에 서울소방재 방안전 빅데이터 (업이 선정됨에 따라 보사회진흥원의 기 분산화된 서울소방 합 및 소방청 빅데(의 연계사업을 추진	크 구축' 공모 난본부의 '소 센터 구축' 사 나, 한국지능정 금을 활용해 데이터의 통 이터 플랫폼과	P.261
신규사업	중대재해없는 안전 보건환경 조성 (소방관서의 중대재 해 예방 등 안전기반 강화추진)		_	740	중대재해처벌법 시 소방기관에 대한 및 중대산업재해의 조치의무 이행을 통해 확보 및 상시근로기 안전하게 일할 수 환경조성을 위해 소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보건 대 시민의 안전 자의 건강하고 있는 사업장	P.257

Ⅳ. 검토의견

1. 개 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 해당 없음.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0.1% 감액된 8,931억 65백만원임.

2) 소방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된 9,457억 71백만원임.

나) 세 출 : (순계)기정예산 대비 2.7% 증액된 9,457억 71백만원임.

- 금회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 회계의 경우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8,941억 46백 만원 대비 0.1% 감액(△9억 8천만원)된 8,931억 65백만원임.
- 소방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46억 4백만원, 지원자원시설세 추가 징수액 43억 3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1억 97백만원 등이 증액되고, 소방안전교부세 23억 8천만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 29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 7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9,207억 39백만원 대비 2.7% 증액(250억 32백만원)된 9,457억 71백만원이며,
- 세출은 순계예산¹⁾규모로 기정예산 9,207억 39백만원 대비
 2.7% 증액(250억 32백만원)된 9,457억 71백만원임.

¹⁾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상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2. 사업별 검토 의견

가. 「소방특별회계」개요

-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19.12.10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이하, '소방회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1.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1.03.25)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음.
- 신설된 소방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법 제141 조에 따라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화재의 주요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총액의 45퍼 센트를 기준으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표] 소방특별회계 세입 구조 현황

구 분	내 용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목적(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 •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 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 당하기 위하여 부과 - 과세대상: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소방안전교부세	- 화재의 주요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퍼센트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 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함. - 전국 자치단체 재정상황, 특수소요 등을 고려하여 배분 되어지기 때 문에 서울시로 배정되는 예산에는 매년 차이가 발생함. - 서울시로 배정된 예산의 75%는 소방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25%는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됨.
일반회계전입금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지원 예산
국고보조금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재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소방보조 인력양성 및 운영 등 13개 사업('22년 기준)에 보조
세외수입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등 자체수입

-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 입금' 및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이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인건비로의 과도한 전입을 제한 하기 위해 '100분의 70이상'의 범위에서 소방정책사업비로 사 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정한도 이상의 소방정책사업비 확보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²).
- 또한, 「소방회계법」제4조³)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세출을 인건 비 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2022회계연도 서울시 소방특별회계 세출 편성구조를 살펴보면, 세출 규모가 총 9,457억 71백만원(제2회 추경안기준)으로 인건비 계정에 6,859억 93백만원, 정책사업비 계정에 2.597억 7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참조)

^{2) ※}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 3. (생략)

^{3) &}lt;u>「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u> 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표] 2022회계연도(금회 추경 포함) 「소방특별회계」세입·세출 현황

○ 세입 : 945,771백만원

(단위		백만원)
(レトシ)	-	ᄞᄜᅜᆉᆁ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전입금	보전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312,487	26,592	554,087	43,438	2,171	6,996
(33.0%)	(2.8%)	(58.6%)	(4.6%)	(0.2%)	(0.7%)

○ 세출 : 945,771백만원

인건비	정책사업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통합재정
708,563	203,916	27,332	763	2,797	2,400
(74.9%)	(21.6%)	(2.9%)	(0.1%)	(0.3%)	(0.3%)



나. 세입예산안(소방특별회계)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9,207억 39백만원 대비 250억 32백만원(2.7%) 증액된 9,457억 71백만원임.

[표] 세입예산(추경) : 9,457억 71백만원 (250억 32백만 원 증액)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세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사유
계	945,771	920,739	25,032	
세 외 수 입	2,171	1,988	183	
보 조 금	6,996	7,003	△7	
보 전 수 입 등	43,438	17,602	25,836	
이 여 금	39,862	15,258	24,604	'21년도 결산잉여금 반영
전년도이월금	156	121	△35	
융자금원금수입	3,420	2,223	1,197	
내 부 거 래	893,166	894,146	△980	
지역자원시설세	312,487	308,157	4,330	'20년 미수금(2,698백만 원) '21년 결산잉여금(1,632백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6,592	28,972	△2,380	
일반회계전입금	554,087	557,017	△2,930	

○ 금회 세입예산 편성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전수입등'에 서 '2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⁴) 246억 4백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1억 9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 '21년도 결산잉여금(소방특별회계)

결산잉여금	계(1)+2)	기정예산①	제1회 추경②	비고
39,862	39,862	15,258	24,604	

-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 주요사 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및 사회적거리두기에 의한 비 대면 업무로의 전환과 함께 당초 계획한 신규임용 채용인력 감소(300→196명)와 교육기간 단축(6→3개월)에 따른 것임.
- 또한 '내부거래'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43억 3천만원 증액되었으나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편성액 대비 확정통보액5)이 23억 8천만원 감소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이 29억 3천만원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총 9억 8천만원이 감액됨.
- 여기서, 일반회계전입금의 감액(29억 3천만원) 사유는 세입원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가 인건비 계정과 정책사업비 계정으로 분리하여 세출에 투입되는 형태로
- 지난연도 결산결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인건비 계정분이 12억 99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계정분의 경우 16억 31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인건비 계정 세입증액분 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의 당초 편성액에서 상쇄하여 감액함에 따른 것임.

5) '22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통보('22. 4. 12)

구분	당초편성액	확정통보액	차액	비고
계	28,972	26,592	2,380	
소방장비	20,781	16,769	$\triangle 4.011$	
인건비	8,191	9,823	1,631	

다. 세출예산안(소방특별회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9,207억 39백만원 대비 250억 32백만원(2.7%) 증액된 9,457억 71백만원으로,

[표] 세출예산(추경) : 9,457억 71백만원 (250억 32백만 원 증액)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사유
계	945,771	920,739	25,032	
행 정 운 영 경 비	735,895	714,101	21,794	
인 건 비	713,032	691,238	21,794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 소송진행 관련 소송 장기화에 의한 미쟁점사항에 대한 우선지급 희망자의 지급 예산 확보
기 본 경 비	22,863	22,863	-	
재 무 활 동	763	763	_	
정 책 사 업 비	203,916	200,594	3,322	소방차량 유류비 부족예산 확보 및 중대재해 없는 안전보건환 경 조성사업 추진 등 소방특별 회계 8개 사업의 기정예산 편 성액 조정
예 비 비	2,797	2,746	51	소방특별회계의 추가세입 발생에 따른 기정 예비비의 조정
통합재정안정화 기 금 예 탁	2,400	2,535	△ 135	소방특별회계의 추경세입 대비 초과세출 편성에 의한 기정예산 의 감액

○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방공무원 초 과근무수당 청구 소송과 관련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현직 소 방공무원, 인건비성)의 우선 지급을 위해 217억 94백만 원을 증액하고.

- '정책사업비'에서 '소방차량 유지관리(소방차량 유류비 부족예산 확보)'와 중도 퇴직자 및 전출자 대상으로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지급 등을 위한 6개 사업에 116억 12백만원을 증액하면서
-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에서 82억 89백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3억 2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예비비'는 소방특별회계 세출 편성 후 잉여 예산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5천 1백만원을 증액한 27억 97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은 「지방기금법」제16조6)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 2021.9.30.)」에 따라 2022년부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 금회 정책사업비 계정에서 추경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을 초과편성함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기정예산에서 1억 35백만원 감액한 24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 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사업별 설명서 p.229)

○ 동 사업은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를 통합 개발하면서 2019년 부터 2025년까지 총 1,237억원을 투입하여 소방재난본부, 종 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동시 입주하는 통합청사를 건립하 려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14억 6백만원 대비 82억 82백만원(73%) 감액한 31억 2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 사업기간: 2019년 ~ 2025년

○ 소요예산 : 1.237억원(건축 896억, 상황실 구축비 341억) ○ 규 모 : 15/5층, 연면적 22,799㎡, 부지면적 1,987㎡ ○ 입주기관 :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

○ 사업방식: 서울시·종로구 통합개발

≪서울시·종로구 종합계약('20.5.)≫

- ▶ 지하주차장 등 공동 사용공간 공사비 ⇒ 서울시 26.6%, 종로구 73.4%(건축연면적 비율)
- ▶ 기타 세부사항(용역·공사)은 관련기관 협의체 및 운영협의체 논의 및 합의

※ 종로구 통합개발 개요

구 분	합 계	소방합동청사	종로구 통합청사
부 지 면 적	8,673.7 m²	1,987㎡(23%)	6,686.7 m² (77%)
연 면 적	85,819.8 m²	22,799m²(26.6%)	63,020 m² (73.4%)
사 업 비	3,916억원	1,237원	2,678억원
입 주 기 관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	종로구청, 종로구의회, 종로보건소





- 금회 감추경사유는 (舊)종로소방서 철거 후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중 '조선시대 사복시 관청터⁷⁾'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발굴되어 '22. 6월 예정이었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연기됨에 따라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연내 착공이 불가능해짐에 기인한 것임.
- 건설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는 하나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의(이전·복원방안)를 통해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2) 소방활동지원, 인력운영비(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관련) (사업별 설명서 p.234, p.238)
 - '소방활동지원'과 '인력운영비' 사업의 금회 증추경은 공히 소방공무워 미지급 초과수당 지급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 먼저, '소방활동지원'은 소방공무원의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회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관련 가지급을 희망하는 '퇴직자 및 타시도 전출자'를 대상으로 배상금(82억 82백만원)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 215억 77백만원 대비 82억 82백만원(38.3%) 증

⁷⁾ 사복시: 임금이 타는 말과 수레를 관장하는 관청

^{8) -} 현장활동대원 비상출동대기 등 소방활동지원비

⁻ 특정업무활동비 지원금

⁻ 소방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액한 298억 59백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인력운영비'의 경우는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가지급을 희망하는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지급금(217억 94백만 원) 지급을 위해 금회 기정예산 6,641억 99백만원 대비 217억 94백만원(3.3%) 증액한 6,859억 93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내역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유
소방활동지원 (미지급초과근무수당 배상금 지급)	29,859	21,577	8,282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계속 적 이자비용의 증가와 관련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 급대상자 중 가지급을 희망하는 '퇴직자 및 타시도 전 출자'를 대상으로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위해 소요예산 확보(배상금)
인력운영비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	685,993	664,199	21,794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계속적 이자비용의 증가와 관련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자 중 가지급을 희망하는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위해 소요예산 확보 (인력운영비)

- 이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09.12.2~현재, 1심 판결 후 일부 항소)'과 관련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누적 이자 증가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툼이 없는 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기 위한 것임.
- 본 소송은 '대구시 상수도사업소 초과근무소송 사건'에서 "실 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⁹)"을 지급하도록 대법원

⁹⁾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비번활동, 휴게, 공동근무),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판결('09.9.10)이 난 이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09.12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경우, 최초에 2006.12.1일부터 2010.5.31 일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음.

[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현황

소송제기 ('09.12.2.)	 (배 경) 대구시 상수도사업소 초과근무소송 사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09.9.10)" *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비번활동, 휴게, 공동근무),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사건수) 최초(13건/1,440명) → 최종(20건/1,765명)
제소전 화해 ('10.2.12./서울중앙지법)	(인 원) 3,481명 (결정내용) 주요소송 3건 중 최초 확정되는 판결기준에 따라 지급(3개월 내)
최초 판결 ('11.11.17./서울중앙지법)	(판결내용) 근무 시간만큼 지급,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기능 *휴일 09시~18시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가지급 ('11.11.23.)	(청구기간) '06.12 ~ '10.05 (소송자) / '06.12 ~ '09.12 (제소전화해자) (지 급 액) 5,078명(소송자 1,440, 제소전화해자 3,481, 미제소자 157) / 1,148억 (항 소)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법규명령(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제한은 정당)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함.
마지급 수당 지급 방침 ('12.12.27.)	(시장방침 목적) 추가 민원 및 소송 등 없이 원만한 해결 나 10.1.1.이후 초과근무수당을 확정판결 기준, 소멸시효가 지나도 지급

-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근무 시간만큼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행지급도 가능하다고 선고(2011.11.17.)됨에 따라 제소자는 물론 제소전화해자 (미제소자 포함)들에 대하여 수당을 가지급('11.11.23.) 하였음.

- 그러나,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가능' 판결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공동근무시간¹⁰⁾ 수당지급(원고측 주장)에 대하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



[그림]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

- 그리고, 2010년 이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2010.1월~2012.9월) 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는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추가 민원과 소송 없이 원만히 해결하고자 대법원 확정판결('22.6.30.)을 기준으로 우선 미지급수당 703억원 중 급회 추경에 일부인 300억 76백만원(=8,282백만원+21,794백만원)11)을 편성하게 된 것임.

[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판결 현황

대법원 판결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 ·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제한
--

행정 1심판결	(가지급물반환 신청 각하)
('22.6.9.)	·가지급 수당(휴일시간외근무수당 제외) 및 미지급 수당(공동근무) 지급
(부산고법) 대법원 확정판결	① 휴일시간외근무수당의 환수 가능, 이자기산일은 지급일
('22.6.30.)	② 공동근무시간(20분)의 초과근무시간 인정

¹⁰⁾ 공동근무시간 : 재난사고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방재난본부 외근부서의 모든 직원이 교대 전 실시하는 장비점검, 전일 중요사항 인계인수 등에 필요한 시간

^{11) &#}x27;**퇴직자 및 타시도 전출자'** 배상금 82억 82백만 원과 '**현직 소방공무원**' 가지급금 217억 94 백만 원을 합한 금액임.

[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추가지급액 예측 현황

(단위: 억 원 / 기준일: 2022.06.20.)

소송구분 (7,888명)	추가지급액	미지급 수당('10.1.~'12.9.) [703억]		공동근무 수당('06.12.~'17.5.) [297억]	
(1,000 6)	(1,000 8)		이자	원금	이자
계	1,000	500	203	207	90
소송자	237	101	52	58	26
미제소자 (화해자포함)	763	399	151	149	64

- 이처럼 과거 소방공무원들에게 무보수 초과근무를 관례 시했던 불합리가 지금에 와서 서울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무보수 근무를 강요하는 불합리 잔재가 남아 있지 않은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 향후 소방재난본부는 쟁점 사항이 있는 관련 소송들에 대해 면밀한 추적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시 관계부서 간(예산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소방행정과, 감사담당관등)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송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3)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별 설명서 p.241)

○ 동 사업은 구조대 운영 장비의 지속적인 보강 및 유지 관리로 효율적인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42억 38백만원 대비 2억 4천만원(5.6%) 증가한 44억 7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증액 편성사유는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3개 소방관서 (특수구조단, 강동소방서, 노원소방서)의 다목적인명구조훈련 장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8억 91백만원(시설비 8억 51백만원, 감리비 13백만원, 시설부대비 27백만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표]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 현황(안)

구	분	특수구조단	노원소방서	강동소방서
조	감 도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		
연	면적	190.70 m²	105.00 m²	131.3 m²
층	수	3층/0층	2층/0층	3층/0층
ㅎ =	년시설	유해화학, 로프구조,	로프 액세스, 비상탈출,	로프구조, 비상탈출,
走	그시걸	비상탈출, 동료구조 등	화재진압 등	화재진압, 인명구조사 등

-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급격한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 최근 1년간 원자재(고철 기준) 가격상승율은 24.1%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6.1%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측이 어려워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됨.

[표] 최근 1년간 원자재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율



- 다목적인명구조훈련장 확충사업의 경우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전문 대응인력 양성 및 특수사고대응 전술 개발과 현장활동대원의 위험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자 하는 사업인 만큼 고품질의 훈련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적정예산 투입이 요구된다 하겠음.

4)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별 설명서 p.245)

- 동 사업은 구급대 운영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속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46억 2백만원 대비 4천만원(1%) 증가한 46억 42백만원을 편성하 였음.
 - 증액 편성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신종감염병에 대해 발병 초 기부터 방역물품을 각 소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였으

나, 보관장소가 협소하여 차고 및 지하창고 등에 보관함에 따라 직사광선 등에 의한 기능저하 및 분실·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표] 소방관서 방역물품 보관 문제







지하창고(항습, 항균 불가)



차고(고온, 직사광선 노출)

- 외부 물류관리창고를 활용한 방역물품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출고 관리를 위해 물류창고 금년도 임대료(4개월분)를 신규로 편성함에 따른 것임.
-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선 소방서에 분산되어 있던 방역물품 보관을 일원화하여 물류관리를 체계 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 환자이송 등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구급대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본부차원에서 적절한 근무여건 개선 및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도 동반되어져야 할 것임.

5) 일반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별 설명서 p.250)

- 동 사업은 LPG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가스 사고 선제적 예방 및 안전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 (국비40%, 구비40%, 자부담20%)으로, 금회 기정예산 2천만 원 대비 8백만 원(40%) 감액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감액 편성사유는 자치구 자체 수요조사(2021년) 당시 7개 자치구, 총 200가구가 신청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가스 전환 예정 가구들의 취소분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며,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로 배정되었다가 자치구로 재배정되어 자치구가 집행하는 예산이기는 하나 소방재난본부도 본 사업 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교체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는 자치구 자체수요조사 당시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만 참여했다는 점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사업홍보가 미진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기 때문임.

6) 소방차량 유지관리 (사업별 설명서 p.253)

○ 동 사업은 소방차량 수리비 및 소모품 구매, 소방차량 유류비 등을 확보하여 소방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 로, 금회 기정예산 42억 7백만원 대비 21억 27백만원(51%) 증가한 63억 3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증액 편성사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국제유가의 상 승과 현장출동 및 소방훈련 증가 등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임. (아래 [표] 참조)

[표] 국제유가 비교(예산 편성 당시와 22년 5월 기준의 평균단가)

구	분	22년 예산편성 단가	22년 1월 5월 월평균 단카	22년 5월 기준 단가	인상률*
경	유	1,401 L /원	1,801원 L /원	2,018 L /원	1 44%
휘	발유	1,569 L /원	1,913 L /원	2,028 L /원	1 29%

[표] 2022년도 소방차 유류 사용량 증가분 (경유 21년 대비 33%★)

구분	2022년 1월~5월	2021년 1월~5월	2020년 1월~5월
경유(ℓ)	1,061,250 ℓ (전년 대비 33% ↑)	797,504 ℓ (전년 대비 17.8% ↑)	676,733ℓ
휘발유(१)	22,512ℓ	14,275ℓ	11,129ℓ

- 다만, 앞서 '3)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유류비 인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현장 출동 및 소방훈련 등에 따른 '유류 사용량' 예측은 충분히 정확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음.

7)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사업 (사업별 설명서 p.257)

- 동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중대재해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 금회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도급사와의 협의체 운영, 유해요인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비 1억 4천만원과 소방관서(29개소)의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구입, 설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비, 작업환경개선 비용 등 공공운영비 6억원을 고려한 총 7억 4천만원을 편성한 것임.
- 지난 5월 실시한 소방관서 중대재해시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31개 소방관서에서 총 155건의 안전보건 관련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장비의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적절한 예산 투입이라 사료됨.
- 또한, 중대재해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 계 확립 및 종사자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지속적인 관리 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표] 중대재해시설 소방관서별 현장점검 결과 (총 155건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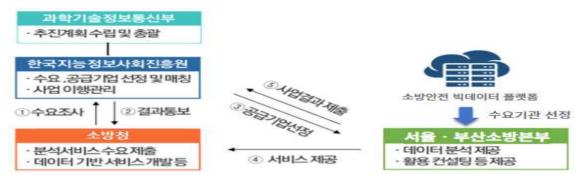
합계	점검 내용 및 결 과									
	시설 결함	기구 결함	정리 정돈	전도 방지	전기 설비	환기 장치	화학 물질	채광 조명	소화 설비	기타
155	24	34	15	12	9	7	19	2	13	20

[표] 소방관서 현장점검시('22.5월) 주요 위험요인 조사결과



8)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별 설명서 p.261)

- 동 사업은 119소방행정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36억 53백만원 대비 1억 83백만원(5%) 증가한 38억 3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증액 편성사유는 서울 지역의 특화된 소방안전 데이터의 분석 및 융합을 통해 소방청과의 플랫폼 연계 등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소방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전산개발비 1억 24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 3백만원, 사무관리비 1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함에 따른 것임.
- '서울소방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월경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1억 83백만원)을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통신진흥 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그림]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지원사업 추진체계

- 서울소방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소방재난 위험 예측 및 전략적 의사결정 제시로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선제적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 대됨.



[그림] 빅데이터 센터 구축 구성도